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 관련 상업 퇴거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거 및 상업 임차인을 퇴거로부터 보호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 관련 상업 퇴거 및 담보권 행사에 대한 주정부의 모라토리움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매 시설 및 레스토랑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팬데믹이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업 임차인 및 주택 담보 대출자를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확대에 따라 상업 임차인 및 주택 담보 대출자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여 임대 또는 주택 담보를 처리하거나, 임대 기간을 재협상하고 다가오는 담보권 행사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의 보건 및 경제 영향은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1일까지 상업 퇴거 및 담보권 행사 모라토리움을 연장할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주거 퇴거 모라토리움과 일치하여 둘 다 같은 날짜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먼저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임차인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주거 및 상업 퇴거에 대하여 3월 20일에 90일간의 주정부 모라토리움을 발표했습니다. 상업 퇴거 및 담보권 행사 모라토리움은 행정명령에 의해 8월 20일, 9월 20일 및 10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지사는 6월 30일에 임차인 세이프 하버법(Tenant Safe Harbor Act)에 서명하고 이는 즉시 발효되었으며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에 대한 퇴거 모라토리움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 임차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추가 비용을 내지 않도록 추가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임차인들이 주거 시설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통해 허용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